
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김남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82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8

발 의 자 : 김남근 · 민병덕 · 김문수
이훈기 · 박선원 · 이주희
박정현 · 이강일 · 남인순
김우영 · 김 윤 · 김현정
진성준 · 최혁진 · 염태영
백승아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,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5배 이내의 손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, 법원의 판결에서는 평균적으로 배상액이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.5배 이하이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.

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인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,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,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

피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한
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도록 함(안 제15조).
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 본문 중 “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”를 “5배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”을 “제1항에도 불구하고”로, “고려하여야 한다”를 “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